

2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56號 1990. 7. 16 公布.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 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제6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0호중 “4인”을 “2인”으로 한다.

5의3. 교통부장관

5의5. 환경처장관

제6조제8항제1호중 “위원(부위원장은 제외한다) 및 환경청장이”를 “위원(부위원장은 제외한다)이”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3년마다 1회 지정업자를 지정하며,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지정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3호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 및 다목중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는 날”을 각각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지역·특정가구 정비지구 또는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제35조제4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 시설로부터 동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의 시설물 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시설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는 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우편함

체신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다.

◇ 改正理由 ◇

無住宅庶民의 傳·月貲價格安定 및 住宅供給촉진을 위하여 多世帶住宅 등 共同住宅의 建築規模를 擴大하고, 近隣生活施設과 共同住宅을 동일 建物에 함께 建築할 수 있는 複合建物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限定된 基地의 효율적 이용 및 住居環境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 가. 聯立住宅 및 多世帶住宅의 供給促進을 위하여 그 建築規模를 聯立住宅의 경우는 현행 동당 建築延面積 330제곱미터 초과·3層 이하에서 동당 建築延面積 660제곱미터 초과·4層 이하로, 多世帶住宅의 경우는 현행 동당 建築延面積 330제곱미터 이하·3層 이하에서 동당 建築延面積 660제곱미터 이하·4層 이하로 각각 上向調整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는 그 建築規模를 4層 이상에서 5層 이상으로 調整함(令 第2條의2).
- 나.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수립할 때에 交通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效果적인 檢討를 위하여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委員에 交通部長官과 環境處長官을 추가함(令 第6條 第8項).
- 다. 현재는 指定業者 指定時期에 관한 規定이 없어 指定業者 指定을 非定期的으로 함에 따라 指定業者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지정에 관한豫測이 不可能하여 住宅建設事業의 專門化 및 大型化 誘導를 위한 制度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年마다 1회 이를 定期的으로 지정하도록 함(令 第11條 第3項).
- 라. 都市計劃法에 의한 아파트의 地區指定權限은 이미 市·道知事에게 委任되어 있고, 아파트 地區開發 基本計劃도 아파트 地區 지정의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하므로 아파트 地區 지정권한의 委任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地區開發 基本計劃에 관한 建設部長官의 承認 권한을 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

에게 委任하도록 함(令 第45條 第3項).

마. 현재는 共同住宅團地안의 동일 建物안에 住宅과 住居用이 아닌 施設과의 複合建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共同住宅團地가 劃一化되고 日常生活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合理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商業地域이 아닌 地域에서의 共同住宅의 경우에도 福利施設·近隣生活施設 등의 日常住居生活에 필요한 施設을 複合的으로 建築할 수 있도록 하여 一般共同住宅團地안에서의 土地利用度의 提高를 유도함(令 別表 4).

〈법제처 제공〉